

大田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議案 番號	571
----------	-----

提出年月日 : '95. 4. .

提出者 : 大田廣域市長

1. 提案理由

- 가. 社會間接資本施設分野에 民間의 參與를 促進하여 創意的이고 效率的으로 社會間接施設을 擴充, 運營하기 위하여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促進法이 制定됨에 따라
- 다.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促進法 第7條第3項 및 同法 施行令 第4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資誘致事業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는 地方審議委員會를 自體的으로 構成 運營하고자함.

2. 主要骨子

- 가. 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各1人을 包含하여 15人以內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副市長,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으로 하며, 委屬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連任할수 있도록 함(案第2條)
- 나. 委員長은 필요한 경우 實務委員會를 둘수 있고, 事務를 總括하며 委員會의 議長이 됨(案第3條, 第5條)
- 다. 委員會는 民資誘致事業과 관련된 事項等を 審議하고, 會議는 市長의 要求나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召集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찬성은 議決, 可否同數는 否決된것으로 봄(案第4條, 第6條)

라. 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때는 專門家에게 意見을 듣거나 資料 및 意見提出을 要請할수 있으며 委員會에 參席하는 委囑 委員 및 專門家에게 수당과 여비를 支給할 수 있음(案第8條, 第10條)

3. 參 考 事 項

가.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民資誘致促進法 第7條第3項

나.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民資誘致促進法 施行令 第4條第7項

參 考 事 項

가.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民資誘致促進法

第7條(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民資誘致事業의 圓滑한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民資誘致事業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는 地方審議委員會를 自體的으로 構成·運營할 수 있다.

나.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民資誘致促進法施行令

第4條(委員會의 運營)

⑦ 法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條例로 定한다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